

서식1

보증료 지원 신청서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

(2쪽 중 1쪽)

처리기간	별도안내
------	------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휴대전화	
	주소				전자우편	

자격 요건	주택소유여부 ¹⁾	(○, ×)	신혼부부 여부 ²⁾ (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)	(○, ×)
	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³⁾	(○, ×)	보증기관 ³⁾	
	보증가입일자 ³⁾		납입보증료 ⁴⁾	원
	임차보증금	원	연소득 ⁵⁾	원

지급계좌 ⁶⁾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비고

통지방법	[] 서면 [] 전자우편(E-mail) [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] 기타 ()
------	--

작성방법

- 1)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소유 여부 기재
(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)
- 2)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
- 3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
- 4)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
- 5)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
- 6)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확 인 (√ 체크)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※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□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청장)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□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, 소득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□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	[]

유의 사항	확 인 (√ 체크)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[]
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,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[]
3.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	[]

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특별자치도지사,시장,군수,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본인확인 서류 : 신분증 2. 서약서 3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(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) 4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. 주민등록등본 6. 혼인관계증명서 7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8. 본인명의 통장 사본
------	--